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08
------	-----

2019. 2. 26.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2월 1일, 이준형 의원(발의의원 10명)

나. 회부일자 : 2019년 2월 7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9. 2.26)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준형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가 도시농업 원년으로 선포한 2012년 이후, 도시농업 활동 공간은 6배, 참여 인구는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으나,

양적 확대가 한계에 봉착하고,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욕구가 점차 다양해지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최근 들어 도시농업은 개인·가족 단위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재배작물과 공간의 다양성 및 창의성 추구, 여가·힐링 차원의 활동에서 교육·수익활동·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서울 도시농업의 전환기를 맞아 도시농업 활동주체들의 활동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의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도시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공동체, 기관 및 단체 등이 서울 도시농업포털시스템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각각의 활동 수준 및 여건에 맞는 정보제공,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도시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공동체, 기관 및 단체 등을 서울도 시농업 회원으로 가입토록 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 조의2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서울도시농업포털(가칭)”을 구축하여 도시농업 활동주체에 대한 회원관리와 함께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 소통 공간 제공과 교육지원 등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도시농업 현황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 제3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도시농업법」 제5조).

<표 1> 도시농업 활성화 종합계획과 서울시 시행계획 비교

정부 종합계획	서울시 시행계획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지원 계획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서울시는 2012년 도시농업 원년 선포 이후,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 사업 추진 등으로 도시농업 활동공간과 참여 시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많은 성장을 거두어 왔음.

- 실제로 도시농업 활동공간은 2011년 29ha에서 2018년 179ha로 약 6배 증가했고, 참여시민 또한 같은 기간 5배가 증가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음.

<표 2> 서울시 도시농업 현황

- 도시농업 활동공간 : '11년) 29ha → '18년) 179ha (약 6배 증가)
- 도시농업 참여시민 : '11년) 125천명 → '18년) 625천명 (약 5배 증가)
- 도시농업 관련 기관·단체 : 165개('18. 12월말 현재)

합 계	도시농업 지원센터	전문과과정 양성기관	도시농업 공 동 체	도시농업 사회적기업	도시농업 협동조합	단체등록	
						비영리	사단법인
165개	5	6	16	15	96	13	14

○ 금년부터는 이러한 도시농업 활동영역의 양적 확대를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도시농부 등록제”를 추진하면서, 4억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표 3> 2019년도 도시농부 등록제 관련 신규 예산 반영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개별사업)	예산과목	2018예산	2019예산	'18년 예산대비		비고
				증 감	증감율	
계			430,000	순증		
도시농부등록제 (포털 구축 운영)	전산개발비	-	150,000	순증		신규 구축
서울농부 등록제 홍보	사무관리비	-	30,000	순증		- 리후렛 제작(1500부) 10000천원 - 홍보부스 운영(4회) 20000천원
서울농부 등록제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	-	250,000	순증		도시농부 농자재 및 교육보조지원 = 100,000원×5,000명×50% =250,000천원

다. 도시농업인 등의 체계적 지원(안 제12조의2 신설)

- 개정안은 도시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공동체, 관련 기관·단체 등을 도시농부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이들의 활동수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 안 제12조의2제1항은 서울도시농업에 가입할 수 있는 회원으로 도시농업인, 도시농업공동체, 도시농업 관련 기관·단체 등(이하 “도시농업인 등”)을 정하고 있음.
- 이 중 개인 회원인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법」 과 조례의 정의에 따르면,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농작물 경작·재배, 수목·화초 재배, 곤충사육)이나 ‘도시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제한됨.

- 이 경우 도시농업을 직접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갖고 박람회, 교육 등에 참여하는 사람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도시농업인의 개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서울도시농업포털시스템”의 구축 목적으로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로 규정하고 있는 바, 회원관리로만 국한하기보다는 도시농업인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홍보, 소통, 교육지원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이 밖에, 개정안이 도시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과 포털시스템 구축, 회원관리 등을 담고 있으므로 조의 제목을 ‘도시농업인 등의 체계적 지원’으로 하는 것보다 각 항의 내용을 종합한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행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는 도시농업 전반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사실상 모든 시민에게 ▶텃밭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연구 기술 개발과 시범사업 ▶교육연수사업 ▶박람회·생활경진대회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이 특별히 회원으로 가입한 도시농업 활동주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으므로, 일반시민에게 제공되는 제20조의 지원 범위를 뛰어넘는 차별적이고 우월적인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 「없음」

가. 수정이유

- 개정안이 도시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과 포털시스템 구축, 회원관리 등을 담고 있으므로 안 제12조의 2제목을 ‘도시 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등’으로 수정하고, 포털의 목적을 ‘회원관리’에서 ‘종합적인 정보 제공, 홍보, 소통, 교육지원 등으로 수정함.

나. 주요내용

- 조 제목을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등으로 수정함(안 제12조의2).
- 도시농업포털의 구축 목적을 확대함(안 제12조의2제3항).
- 시행일을 조례 공포 후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부칙).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2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08
----------	-----------

제안년월일 : 2019년 2월 26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이 도시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과 포털시스템 구축, 회원관리 등을 담고 있으므로 안 제12조의 2제목을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등’으로 수정하고, 포털의 목적을 ‘회원관리’에서 ‘종합적인 정보 제공, 홍보, 소통, 교육지원 등’으로 수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 제목을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등으로 수정함(안 제12조의2).
- 나. 도시농업포털의 구축 목적을 확대함(안 제12조의2제3항).
- 다. 시행일을 조례 공포 후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부칙).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12조의2의 제목 “(도시농업인 등의 체계적 지원)”을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등 체계적”을 “등을 체계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를 “업무와 종합적인 정보 제공, 홍보, 소통, 교육지원 등”으로, “서울도시농업포털 시스템”을 “서울도시농업포털”로 한다.

안 부칙 중 “2019년 2월 일”을 “공포한 날”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인, 도시농업 공동체, 도시농업 관련 기관·단체 등(이하“도시농업인 등”이라 함)을 서울 도시농업 회원으로 가입토록 하여 각각의 활동수준 및 여건에 맞게 교육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업무와 종합적인 정보 제공, 홍보, 소통, 교육지원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서울도시농업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업무 등에 있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가입 절차, 회원정보 처리, 지원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2조의2(도시농업인 등의 회원 관리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인, 도시농업공동체, 도시농업 관련 기관·단체 등(이하 “도시농업인 등” 이라 함)을 서울도시농업 회원으로 가입토록 하여 각각의 활동수준 및 여건에 맞게 교육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u></p> <p><u>③ 시장은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업무와 종합적인 정보 제공, 홍보, 소통, 교육지원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서울도시농업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u>④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업무 등에</u></p>

현행	개정안
	<p>있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가입 절차, 회원정보 처리, 지원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